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8년 4월 12일

## 2017년 임금동향 및 2018년 임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2(seesaram@kli.re.kr)

2017년 제조업 증가세와 투자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잠정치)은 3%대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상승률은 2.7%(1.1%p↓)에 불과했으며,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확대로 실질임금상승률은 0%대를 기록하였다. 2017년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용직의 임금상승폭 둔화와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이 두 요인은 모두 특별급여의 감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2017년에 이어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16.4%)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은 임금상승요인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전년대비 0.9%p 하락한 2.6%인 점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 감소로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8년 임금상승률은 2017년 실적치(2.7%)와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크게 상회하는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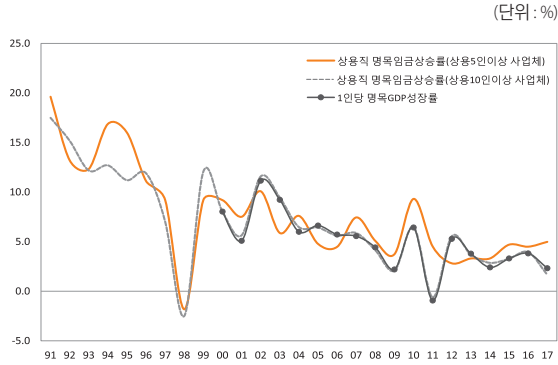
### I. 2017년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대비 큰 폭 둔화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증가세 확대와 투자의 증가로 당초 경제성장 전망치(2017년 1월 2.5%)를 넘어선 3.1% 성장률(잠정치)을 기록했다. 세계무역이 반등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문 수출이 전체 수출의 31.4%를 차지하는 등 반도체 부문이 수출을 견인하였고, 건설투자의 증가세와 설비투자의 플러스 전환이 3년 만에 3%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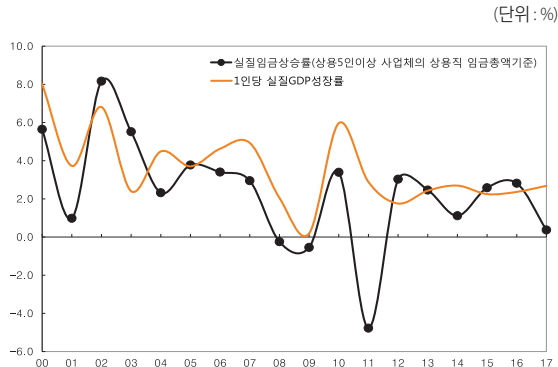
이러한 경제전반의 흐름 속에서 2017년 실질임금 상승률(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기준, 이하 전체 근로자)은 0.8%로 전년대비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2.9%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이며, 명목임금상승폭의 둔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확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2017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1%p 하락한 2.7%인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0.9%p 상승한 1.9%로 나타나 0%대의 실질임금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 3.1%,  
그러나 명목·실질임금상승률은  
각각 2.7%, 0.8% 상승

[그림 1] 명목GDP성장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추이(1인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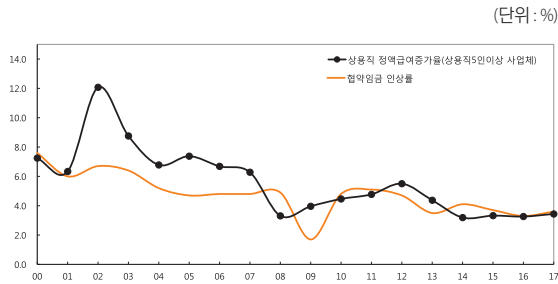
[그림 2] 실질GDP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1인당 기준)



주: 1) 명목임금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2) 실질임금상승률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100임.  
 3) 1인당 실질GDP성장률의 실질GDP를 추계인구로 나누어 계산함(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그림 3] 협약임금상승률과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 추이



주: 상용직 정액급여는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laborstat.moel.go.kr/e-나라지표,www.index.go.kr)

2017년 상용직의 1인당 명목임금상승률(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은 2.3%로 1인당 명목GDP성장률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이 추세는 2014년부터 이

어지고 있다.<sup>1)2)</sup> 2017년에는 이 두 지표 간 격차가 전년대비 확대되었으며,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도 전년대비 0.3%p 하락한 63.0%로 나타나 2010년(59.4%) 이후 증가하던 추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2017년 협약임금인상률은 3.6%로 전년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임금인상률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은 소폭 상승한 것을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협약임금은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과는 차이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상용직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를 제외한 정책급여도 2017년 전년대비 0.3%p 상승하면서 협약임금상승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 II. 2017년 임금동향 특징

2017년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3.1%인 가운데 명목·실질임금상승률은 모두 전년대비 크게 둔화되었다.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14년 2.5%를 저점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임금상승률의 둔화는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상승률 둔화,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두 요인 모두 상용직의 특별급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017년 임금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상용직의 특별급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이다. 2017년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2.3%로 전년대비 1.5%p 하락했으며, 여기에는 상용직 특별

**2017년 상용직의  
 1인당 명목·실질임금상승률은  
 1인당 명목·실질GDP성장률 하회**

1)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실태부문 자료는 2008년부터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대상(1999~2007년),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대상(1993~1998년)으로 근로실태부문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조사대상을 확대해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추가조사)」에서도 2017년 실질임금상승률(전체 임금근로자 기준)은 전년대비 0.2% 감소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와 비슷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임금동향을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천 원/월, 시간/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체 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상승률)	2,569 (-)	2,636 (2.6)	2,816 (6.8)	2,844 (1)	2,995 (5.3)	3,111 (3.9)	3,190 (2.5)	3,300 (3.5)	3,425 (3.8)	3,519 (2.7)	
	실질임금상승률	-	-0.1	3.8	-2.9	3.1	2.5	1.3	2.7	2.8	0.8	
	상 용 직	임금총액 (상승률)	2,802 (4.4)	2,863 (2.2)	3,047 (6.4)	3,019 (-0.9)	3,178 (5.3)	3,299 (3.8)	3,378 (2.4)	3,490 (3.3)	3,623 (3.8)	3,707 (2.3)
		실질임금상승률	-0.2	-0.5	3.4	-4.7	3.0	2.5	1.1	2.6	2.8	0.4
		정액급여 (상승률)	2,057 (3.3)	2,139 (4.0)	2,234 (4.5)	2,341 (4.8)	2,470 (5.5)	2,578 (4.4)	2,660 (3.2)	2,749 (3.3)	2,838 (3.2)	2,936 (3.5)
		초과급여 (상승률)	179 (7.5)	175 (-2.2)	196 (12.2)	179 (-8.4)	181 (1.0)	184 (1.7)	201 (9.3)	216 (7.4)	225 (4.2)	226 (0.4)
		특별급여 (상승률)	566 (7.7)	550 (-2.8)	617 (12.3)	498 (-19.3)	527 (5.8)	537 (1.8)	516 (-3.7)	525 (1.6)	560 (6.7)	545 (-2.7)
	비상용직 임금총액 (상승률)	1,052 (-)	1,073 (1.9)	1,056 (-1.6)	1,215 (15.1)	1,293 (6.4)	1,377 (6.5)	1,387 (0.7)	1,424 (2.7)	1,469 (3.2)	1,539 (4.8)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임금총액 (상승률)	1,846 (5.8)	1,852 (0.3)	1,949 (5.2)	2,032 (4.3)	2,104 (3.5)	2,181 (3.7)	2,231 (2.3)	2,297 (2.9)	2,368 (3.1)	2,423 (2.3)
	실질임금상승률	0.1	-1.6	2.5	-0.2	1.9	2.2	0.7	2.2	2.5	-0.2	
소비자물가지수	4.7	2.8	3.0	4.0	2.2	1.3	1.3	0.7	1.0	1.9		
실질GDP상승률	2.8	0.7	6.5	3.7	2.3	2.9	3.3	2.8	2.9	3.1		
근로시간 (월)	전체 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상승률)	176.7 (-)	176.1 (-0.3)	176.7 (0.3)	176.3 (-0.2)	174.3 (-1.1)	172.6 (-1.0)	171.4 (-0.7)	172.6 (0.7)	171 (-0.9)	167.8 (-1.9)	
	상용직 (상승률)	184.8 (-1.9)	184.4 (-0.2)	184.7 (0.2)	182.1 (-1.4)	179.9 (-1.2)	178.1 (-1.0)	177.1 (-0.6)	178.4 (0.7)	176.9 (-0.8)	173.3 (-2.0)	

주: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는 2011년부터 조사대상을 종사자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며, 산업분류를 개편(KSIC 8차 → KSIC 9차)하고 2008년 이후 시계열 연계자료를 재산출함.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자료이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의 임금은 임금근로자 전체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출한 실질임금상승률은 각 연도 6~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것임.

4) 실질GDP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100임.

5)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_\_\_\_\_, 「가계동향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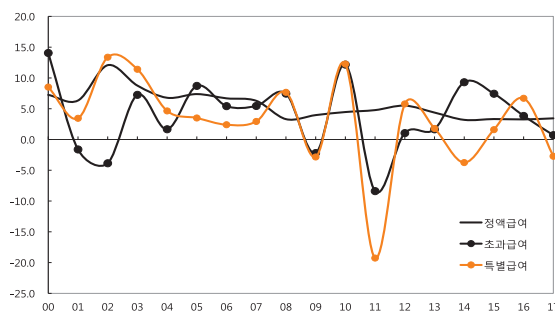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급여가 전년 대비 2.7%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를 보면 상용직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변동이 정액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 즉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건설업의 호황으로 건설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 즉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이 동반 성장이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별급여형태로 지급되는 변동성 급여의 증가로 특별급여는 6.7% 증가했다. 이 외에도 2016년에는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했다. 2016년 특별급여상승폭이 가장 컸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수익성 지표인 2017년 3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그림 4] 상용직 임금내역별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이 7.43%로 전년 동기 대비 3.6%p 하락한 영향 등으로 2017년 특별급여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이 외에도 2016년 특별급여 상승을 견인했던 건설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2017년 상용직 임금상승폭 둔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임금상승을 주도했던

에너지관련산업과 건설업

직·간접관련산업에서의 특별급여

기저효과와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교섭 지연으로 인한 상용직의

특별급여 감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폭 둔화

상용직 전체의 특별급여는 감소했지만 대표적인 내수 의존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42.5%)과 도매 및 소매업(7.7%), 그리고 교육서비스업(13.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0.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8.5%), 금융 및 보험업(1.1%) 부문에서는 특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들에서도 특별급여 증가폭은 전년 대비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상용직 특별급여의 변동이 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는 임금협상 타결시기가 예년과 달리 지연됨에 따라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타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임금상승률 편차가 큼**

2017년 임금동향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둔화된 점이다.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간 임금상승률 격차는 2016년보다 더 확대된 모습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4.2%로 전년 대비 0.5%p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은 전년 대비 1.8%p 하락하면서 0%대 상승률에 그쳤다.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이 포함된 비상용직 임금상승률은 전년 대비 8.2%p 상승한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직 임금상승률 둔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상용직 특별급여의 변동은 중소기업 사업체보다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표 2>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내역을 보면,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전년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체의 산업별 특별급여 변동을 살펴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40.4%(2016년) → -1.3%(2017년),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7% → -15.5%, 도매 및 소매업 4.0% → -18.0%, 제조업 7.6% → -1.2%로 변동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처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017년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동 산업 대규모 사업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5	2016	2017
중소규모	소계	2,938 ( 3.6)	3,048 ( 3.7)	3,176 ( 4.2)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351 ( 3.8)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772 ( 4.2)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202 ( 2.6)
	특별급여	349 ( 5.3)	371 ( 6.1)	377 ( 1.5)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554 ( 4.6)
대규모	소계	4,849 ( 3.7)	4,959 ( 2.3)	4,983 ( 0.5)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145 ( 0.3)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598 ( 2.3)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4 (-2.1)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1,223 (-4.5)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00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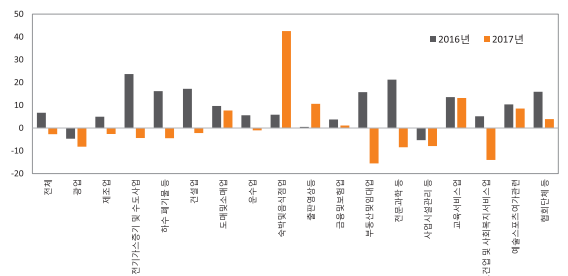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 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5] 산업별 상용직 특별급여 변동(2016년·2017년)**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체에서도 특별급여는 2.2% → -11.9%로 감소하였다. 다만 대규모 건설업에서 특별급여는 2016년에 이어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상승폭 둔화와는 달리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직의 2017년 임금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다(표 3 참조).

2017년 「임금결정현황조사」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결정률은 83.7%로 전년 대비 부진했으며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제조업 임금결정률도 86.8%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체 중 제조업과 제조업 본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특별급여 감소폭이 컸을 개연성이 높다.

2017년 임금동향의 주요 특징은 산업별 임금상승

3)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결정률은 79.2%로 558개 사업체 중 442개 사업체가 연내 임금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는 2016년 81.3%에 미흡한 수준이다.

〈표 3〉 상용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상용근로자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2005	2,404 ( 6.6)	2,158 ( 6.7)	1,783 ( 8.6)	2,081 ( 7.0)	2,259 ( 6.3)	2,517 ( 5.4)	3,357 ( 6.1)
2006	2,542 ( 5.7)	2,283 ( 5.8)	1,886 ( 5.8)	2,187 ( 5.1)	2,413 ( 6.8)	2,646 ( 5.1)	3,493 ( 4.1)
2007	2,683 ( 5.6)	2,426 ( 6.2)	1,957 ( 3.7)	2,331 ( 6.6)	2,574 ( 6.7)	2,836 ( 7.2)	3,744 ( 7.2)
2008	2,802 ( 4.4)	2,493 ( 2.7)	2,055 ( 5.0)	2,385 ( 2.3)	2,593 ( 0.7)	2,928 ( 3.2)	3,921 ( 4.7)
2009	2,863 ( 2.2)	2,557 ( 2.6)	2,115 ( 2.9)	2,442 ( 2.4)	2,682 ( 3.4)	2,957 ( 1.0)	3,934 ( 0.3)
2010	3,047 ( 6.4)	2,699 ( 5.5)	2,212 ( 4.6)	2,561 ( 4.9)	2,837 ( 5.8)	3,126 ( 5.7)	4,291 ( 9.1)
2011	3,019 (-0.9)	2,675 (-0.9)	2,186 (-1.2)	2,562 ( 0.0)	2,864 ( 0.9)	3,113 (-0.4)	4,273 (-0.4)
2012	3,178 ( 5.3)	2,834 ( 5.9)	2,295 ( 5.0)	2,711 ( 5.8)	3,046 ( 6.4)	3,355 ( 7.7)	4,424 ( 3.5)
2013	3,299 ( 3.8)	2,938 ( 3.7)	2,389 ( 4.1)	2,815 ( 3.8)	3,145 ( 3.2)	3,484 ( 3.9)	4,583 ( 3.6)
2014	3,378 ( 2.4)	3,008 ( 2.4)	2,434 ( 1.9)	2,931 ( 4.1)	3,258 ( 3.6)	3,443 (-1.2)	4,827 ( 5.3)
2015	3,490 ( 3.3)	3,110 ( 3.4)	2,539 ( 4.3)	3,063 ( 4.5)	3,351 ( 2.8)	3,487 ( 1.3)	5,017 ( 3.9)
2016	3,623 ( 3.8)	3,228 ( 3.8)	2,634 ( 3.7)	3,183 ( 3.9)	3,462 ( 3.3)	3,668 ( 5.2)	5,131 ( 2.3)
2017	3,707 ( 2.3)	3,351 ( 3.8)	2,754 ( 4.5)	3,267 ( 2.6)	3,519 ( 1.7)	3,881 ( 5.8)	5,145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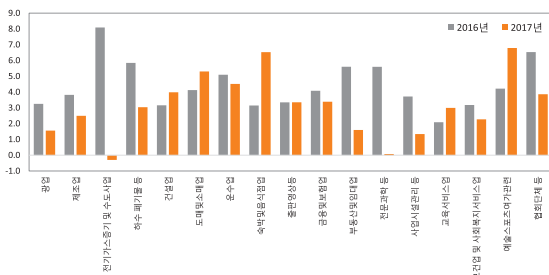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2)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6〉 산업별 임금상승률 비교(2016년·2017년)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를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이 전년대비 낮은 이유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부문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평균 임금상승률(3.8%)을 크게 상회했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1%)의 경우, 201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0.3%)되었고, 이 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2017년 0~1%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건설업(4.0%, 0.8%p ↑), 도매 및 소매업(5.3%, 1.2%p ↑), 숙박 및 음식점업(6.5%, 3.4%p ↑), 예술·스

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8%, 2.6%p ↑) 부문은 2017년 평균 임금상승률 2.7%를 상회하면서 전년대비 임금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내역(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별 변동이 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7년 임금변동폭이 컸던 산업들에서 큰 폭의 특별급여 변동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 III. 임금구조 변화

2017년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임금상승률은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상용직의 특별급여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는 2017년 「사업체노동력조사(사업체 응답)」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구 응답, 8월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임금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중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먼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17년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전체 근로자 기준 3.7→4.2%)은 확대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전체 근로자 기준 2.3→0.5%)은 크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상대임금수준 전년대비 개선

4) 두 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시점, 응답자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4대보험 가입여부, 복지혜택 등 근로실태에 관해 조사하였다.



게 둔화되었다.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을 2년 연속 상회하면서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수준(대규모 사업체 임금=100)은 다소 개선되었다.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수준은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0.3%(시간당임금 기준)로 개선된 이후 59~60%대에서 횡보하다가 2017년 62.1%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임금으로 보더라도 2017년 중소기업 상대임금수준은 63.7%로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용직 대비 비상용직의 상대임금수준은 2010년 가장 낮은 수준(55.5%, 시간당임금 기준)이었으며, 이후 상대임금수준 격차는 빠르게 좁혀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65.5%로 가장 개선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2017년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상대임금수준(상용직 대비 비상용직)과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수준(정규직 대비 비정규직)도 전년대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참조).

2017년 특성별 상대임금수준 격차가 좁혀진 것은 긍정적이나 조사대상이 사업체이든 가구이든 두 조사 모두에서 사업체규모별,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관찰되고 있으며, [그림 8]에서 처럼 노동시장에서 가장 관찮은 집단인 대규모·유노조·정규직('D')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단인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E')의 고용안정성, 복지수준 등에서 관찰되는 현저한 차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이중구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8%(0.5%p ↑, 2017년)로 47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0%대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

〈표 4〉 특성별 상대임금수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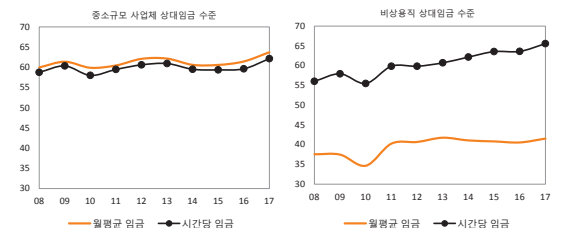
(단위: %)

	시간당임금		
	비상용직(상용직=100)	비정규직(정규직=100)	중소규모(대규모=100)
2004	51.0	73.5	58.3
2005	48.8	70.5	56.3
2006	49.5	71.0	55.5
2007	47.7	70.9	54.4
2008	47.5	68.0	54.6
2009	46.5	61.5	55.5
2010	47.2	62.5	54.0
2011	49.2	65.3	55.1
2012	48.8	64.3	54.9
2013	49.3	64.8	55.3
2014	50.5	64.3	56.0
2015	52.0	65.0	57.2
2016	52.2	65.4	56.0
2017	55.5	67.0	59.7

주: 전체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임금 기준임.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 주당 근로시간\*30.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그림 7〉 중소기업, 비상용직의 상대임금수준(월평균임금·시간당임금)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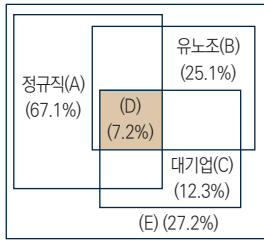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시간당임금은 특성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비중은 26.6%,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중 저임금 근로자는 43.5%에 이른다.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는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2.8%에서 2012년 9.6%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13.4%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견고한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항목들에서도 사업체 규모별, 근로형태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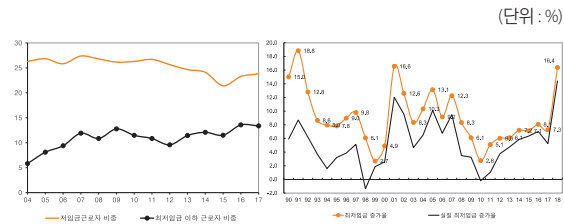


	D	E
근로자수	1,435	5,408
월평균임금	397	142
시간당임금	22,277	9,482
근속연수	13.6	2.3
사회보험		
국민연금가입률	98.8	31
고용보험가입률	77.5	38.6
건강보험가입률	99.5	39.8
복수준		
퇴직금지급률	99.7	36.9
상여금지급률	97.2	35.2
시간외수당지급률	89	19.9
교육훈련여부	99.4	37.5

주: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 주당 근로시간\*30.4/7).

'D'는 대기업 유노조·정규직, 'E'는 중소기업 무노조·비정규직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저임금·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과 최저임금(실질최저임금)증가를 추이



주: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시간당 평균임금이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e-나라지표, www.index.go.kr

것으로 보이지만 양호한 민간소비와 추경예산집행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발표하였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가능성이 존재해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sup>7)</sup>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성장과 함께 최저임금 16.4% 인상은 2018년 임금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높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월급여의 인상이 어려운 일부 부문에서는 근로시간 조정이 발생하므로 실제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월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저임금 부문에서의 월급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sup>8)</sup> 이 밖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또한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기적 요인과 정부의 정책의지 외에 노사 관계요인도 임금상승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경총은 2016년이나 2017년과 달리 동결이 아니라 2% 인상안을 내놓았으며, 한국노총도 2016, 2017년과 달리 7%대의 인상률이 아니라 9%대의 인

**민주노총 224,000원,  
한국노총 318,479원 정액 인상,  
경총은 2년 연속 동결이었던 것과  
달리 2.0% 내외 인상 권고**

## IV. 2018년 임금전망

### 1. 2018년 양대노총과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

매년 양대노총과 경총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8년 임금인상요구율을 9.2%(월 318,479원, 정규·비정규직 동일 금액, 월고정 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로 확정하여 발표했으며, 민주노총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임금 요구안으로 동일금액 인상안(월 224,000원, 정액급여 기준)을 제시하였다.<sup>6)</sup>

경총은 「2018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통해 2018년 임금을 전년대비 2.0%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 2. 2018년 거시경제지표 및 노동시장 지표 전망

한국은행(2018.1)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3%대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6) 한국노총·민주노총 모두 정규·비정규직 동일한 임금인상요구액을 요구했으며, 이를 적용하면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20.4%,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14%대 수준이 된다.

7) 최근 OECD(2018.3)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으며, 회원국 대부분의 전망치를 상향하여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3.0%를 유지하였다.

8) 2018년 1월 2일부터 4월 2일 현재 누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509천 명, 사업장은 463개소이다.

〈표 5〉 2018년 경제전망

(단위: %)

		2017			2018p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한국은행 (2018.1)	GDP	2.8	3.4	3.1	3.2	2.8	3.0
	민간소비	2.1	2.8	2.5	2.9	2.5	2.7
	설비투자	15.9	12.8	14.3	2.1	2.9	2.5
	건설투자	9.4	5.4	7.2	-0.5	0.0	-0.2
	상품수출	4.2	3.0	3.6	3.0	4.2	3.6
	상품수입	9.3	5.3	7.3	2.2	4.1	3.2
한국노동연구원 (2017.12)	취업자증가율	2.0	1.9	1.9	1.5	1.8	1.7
	실업률	1.2			1.1p		
		3.7			3.7p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보도자료(2018.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12월호.

경제성장세 지속, 양호한 민간소비 증가세, 최저임금 큰 폭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등은 임금상승요인으로, 공무원 임금상승폭 둔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상승제약요인으로

2018년 임금상승률은 2017년 실적치와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3.8% 수준

상률을 제시하였다.

### 3. 2018년 임금전망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이론상 임금상승률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sup>9)</sup> 이 경우 2018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 즉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3.0%) 및 물가상승률 전

망치(한국은행 1.7%),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1.1%)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2018년 임금상승률은 약 3.6%가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이 외에 앞에서 언급한 노동시장의 여건, 노사관계 등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2017년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양호한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양호한 경제성장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16.4%)과 더불어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이 예년보다 강한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전년대비 0.9%p 하락한 2.6%인 점과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 감소로 인해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18년 임금상승률은 2017년 실적치(2.7%)와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크게 상회하는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로 산출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총, 「2018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보도자료.
- 민주노총, 「2018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보도자료.
- 한국노총, 「2018년 임금인상요구율」 보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
- 「2018년 경제전망」 보도자료.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